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경상남도

www.gyeongnam.go.kr

공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조 례

제5521호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5522호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제5523호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5524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5525호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	7
제5526호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9
제5527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제5528호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
제5529호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15
제5530호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17
제5531호	경상남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제5532호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20
제5533호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	25

규 칙

제3362호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6
제3363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37

조 례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인

2023년 10월 10일

● 경상남도 조례 제5521호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5명”을 “8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200,000원”을 “300,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입법·법률고문이 다음”으로, “입법·법률 관련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별도”를 “사항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 고문료를 추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월 2건 이상인 경우”를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 사항이 월 5건을 초과하는 경우 5건을 초과하는 1건당 5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경우”를 각각 “경우 10만원”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소송수임료 등) 법률고문이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건의 수임료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행정소송의 수임료는 민사소송 지급기준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인

2023년 10월 10일

● 경상남도 조례 제5522호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물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인

2023년 10월 10일

● 경상남도 조례 제5523호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 제목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인

2023년 10월 10일

● 경상남도 조례 제5524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3. 법 제11조 및 영 제8조”를 “3. 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 4.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제32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7조제7항제2호, 영 제35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2조제5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을 “80”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인

2023년 10월 10일

● 경상남도 조례 제5525호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내에서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그 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양성된 전문인력 또는 제10조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내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지원 및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방사업 및 교육) 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및 보급·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유해·위험 요인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농어업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안전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인의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이나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예방 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6조와 제7조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인정요건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예방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인

2023년 10월 10일

● 경상남도 조례 제5526호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나.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2. “청년농어업인”이란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어업인등은 농어업·농어촌의 선도적 주체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후계농어업인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후계농어업인등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후계농어업인등의 주거·문화·복지 등 농어촌 정착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등의 성별, 나이 및 거주지 등 일반 현황
2. 후계농어업인등의 농어촌 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
3.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시책 수립·추진 현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지원 사업 중 자비 부담분 지원
2. 농어업 관련 창업 및 정착
3. 농어업 관련 기술·경영교육 및 컨설팅
4. 후계농어업인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로 지원
5.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기준 및 지원 조건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어업인등은 사업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신청 및 지원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적극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영어 작업환경 현대화
3. 영농·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업적 농어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관련 단체 지원)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관련 단체가 농어업인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중복 지원 제한)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 지원의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리·감독)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매년 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어업인등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2.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와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청년농어업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및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이 조례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및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본다.

제5조(육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에 따른 육성계획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인

2023년 10월 10일

● **경상남도 조례 제5527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 중 “농어업기계임대사업”을 “농어업기계임대사업 및 농어업기계 수리비 지원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인

2023년 10월 10일

● 경상남도 조례 제5528호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 범위에 관한 사항
- 2. 도지사가 도시철도 운임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도시철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당연직
 - 가. 도시철도 업무 담당 국장
 - 나. 철도, 교통 및 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
- 2. 위촉직
 - 가. 경상남도의회 의원
 - 나. 금융·회계·통계·경제 등 단체대표와 학계 및 관계 전문가
 - 다. 그 밖에 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대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은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운임조정관련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운임조정관련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인

2023년 10월 10일

● 경상남도 조례 제5529호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폐해 예방 및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2.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3. “마약류취급자”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민의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경상남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예방 및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이하 “마약류 폐해 예방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 및 추진 방안
- 3.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 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폐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제5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2. 마약류 유통에 관한 관리 사업
3.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교육
4.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5.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폐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① 도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마약퇴치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마약퇴치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경상남도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또는 경상남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폐해 예방 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협조요청)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시책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인

2023년 10월 10일

● 경상남도 조례 제5530호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과 경상남도민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2. 피해자등에 대한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3.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제6조(지원시설의 업무)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3. 피해자들의 보호와 임시거소의 제공 및 숙식 제공
4.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의 제공
5. 스토킹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2023년 10월 10일

● 경상남도 조례 제5531호

경상남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남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이나 기타 인지기능의 저하가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뚜렷하게 감퇴된 상태이나, 일상 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치매 고위험군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중전의 제8호) 중 “치매관리에”를 “치매관리를 위하여”로 한다.

8.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도지사는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도인지장애 관련 연구 및 조사
2. 경도인지장애 검진 인프라 확대
3. 지역사회 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경도인지장애 환자 발굴
4. 경도인지장애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부개정 2019.6.9.> 도지사”를 “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부개정 2019.6.7.> 수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인

2023년 10월 10일

● **경상남도 조례 제5532호**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및 권리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의무) 모든 도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실시하는 조사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정신건강증진정책의 추진 등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 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지역계획 및 제5조제2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사업등을 실시하고, 시·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광역센터의 운영을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광역센터의 운영 또는 사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센터의 장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광역센터는 「의료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위기대응 강화) ① 도지사는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과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소방본부, 경상남도경찰청,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학교 및 관련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높은 상황 등 정신질환 관련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위기대응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개입 및 대응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기대응팀의 기능은 필요에 따라 광역센터나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지원하거나 이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사업에 대한 지역계획 수립·시행 관련 자문
2. 지역계획의 시·군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 지원
3.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자문과 지원

4.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지원
 5.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
 6.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시설,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7.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수집·분석 또는 그 지원
 8.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및 심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3. 법 제6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및 시·군 간 연계체계 구축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정신건강의 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정신건강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정신질환자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등

제12조(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개발)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른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2.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위한 거주·치료·재활·교육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
3. 정신질환자의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서비스 지원
4.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5.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조기 퇴원 및 탈원화 대책 수립·지원
6. 정신질환자의 권익옹호 활동 및 동료지원가 양성 지원 등
7.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연계 협력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자립생활 지원) 도지사는 정신질환자 또는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립생활 및 취업에 관한 교육 및 기능 훈련
2.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3.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용
4. 동료상담, 자립역량 강화 및 권익보호 사업
5. 정신질환자 자립생활단체·시설 보호·육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신질환자들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정신질환자등 가족 지원)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들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들의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
2.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3. 정신질환자등 가족의 모범사례 또는 위기사례 발굴 및 지원
4. 가족 내·외부 소통 및 갈등해소에 관한 역량 강화 지원
5.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신질환자들의 회복과 자립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들의 가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비용지원)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등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지원비(약물치료, 재활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2. 의료비(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증상이 재발하거나 재입원을 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상담, 진료, 약물치료, 낮 병원 이용 등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자립정착지원비(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주거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은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신질환자등으로서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포함한다)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 대상은 도지사가 정하는 저소득층 기준에도 해당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이상 입소·입원 후 퇴소·퇴원한 사람
2.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 또는 낮 병원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지역사회 재활연계사업을 통하여 취업한 사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범위,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6조(탈원화 지원)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들의 장기입원·입소를 지양하고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및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종합대책 지역계획에 정신질환자등 탈원화 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탈원화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지원

2. 정부의 탈원화 정책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기능 전환

③ 도지사는 지역계획(시행계획을 포함한다)에 탈원화 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할 경우 별도로 탈원화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지역사회 전환)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 법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자, 거주자, 입원환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자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시설 퇴원·퇴소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립생활주택(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거주하며 일상 및 사회적응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공

2. 지원주택(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복지 및 주거유지 서비스가 함께 지원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공

3. 주택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 지원

4. 통합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지원

제18조(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신재활프로그램 등 정신질환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적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신재활시설은 필요한 경우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권익보호)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촉진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교육, 문화·예술, 관광, 체육, 취업활동에서의 배제 또는 기회의 제한,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인권교육) ① 도지사는 도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인권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권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도내 각 병원·의원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거나,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이용 편의 및 강사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도지사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정신건강증진시설로부터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매년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 입·퇴원(소) 관리

2. 입원·입소·이용 환자 폭행 및 가혹행위

3. 시설의 편의성 또는 부족인력 보충 목적의 실장(방장)제도 운영 여부

4. 포괄적 행동제한 금지 및 격리·강박지침 준수 여부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5. 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노동 강요행위 유무 및 작업요법 시행방법 등 준수 여부
6. 정신질환 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활성화 및 기타 권익보호 사항

제4장 보 칙

제2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군과 정신건강증진관련 단체·시설 등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21조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평가한 후 이를 공표하거나 재정지원 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행 중인 업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인

2023년 10월 10일

● 경상남도 조례 제5533호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민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를 통해 정체성 확립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경상남도 도민의 날을 제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민의 날) 경상남도 도민의 날(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4일로 한다.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제3조(기념행사 등)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민의 날 기념식
2. 문화·예술·체육 행사
3. 도민의 날 기념을 위한 사업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날을 전후하여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 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시·군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제1항에 준하여 면제 또는 할인될 수 있도록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남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인

2023년 10월 10일

● 경상남도 규칙 제3362호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제5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소속 당연직 위원 1명과 사용허가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위촉직 위원 2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조례 제30조제8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시설의 사용허가를 심의·의결한다.

1. 대관신청자의 자격, 대관료 납부 등 사용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2. 동일한 사용허가시설에 동일한 기간동안 사용신청자가 복수인 경우
3. 사용자 선정을 두고 과열경쟁 등으로 형평성, 공공성, 공정성 등의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호 중 “행사 : 100%”를 “행사: 10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행사 : 50%”를 “행사: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경우 : 50%”를 “경우: 50퍼센트”로 한다.

제9조의4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제14조제4호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12호서식, 제20호서식, 제21호서식, 제22호서식, 제23호서식, 제25호서식 및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작품추천 · 심의위원 추천서

분 야		<input type="checkbox"/> 평면 <input type="checkbox"/> 입체 <input type="checkbox"/> 미디어 <input type="checkbox"/> 학예/이론				
피 추 천 인	인적사항	한 글		호	한글 (한자)	
		한 자		최종학력		
		영 문				
		성 별				
		국 적		생년월일		
		주 소	(-)			
		진 화	()	휴대폰		
		팩 스	()	이메일	@	
주요경력	기 간	활 동 상 황				
	~					
	~					
	~					
	~					

상기 인을 경남도립미술관 작품추천위원 · 작품심의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제 출 일 : . .

추 천 기 관 : (직인)

대 표 : (날인)

경남도립미술관장 귀하

※ 상기 정보는 경남도립미술관 작품추천 및 심의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용도만으로 사용
됩니다.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별지 제23호서식]

소장작품 관리카드

경남도립미술관

관리번호		현재위치	
<p>사 진</p>			
작가명	국 적	성 별	출생년도 사망년도
명 제		부 문	
작품유형		제작년도	
재료 및 기법		표기사항	
일련번호		규 격 (cm)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양식(시대/유파/사조)	취득일시			
취득방법 구입 () 기증 () 관리전환 ()	취득가격			
소장경력	저작권자 미술관 () 기타 ()			
전시이력	상태조사 이력			
작품설명				
관련문헌				
관련시각자료 사진 () 슬라이드 () video tape () 도판용 필름 () CD-ROM () 포스터 () 엽서 () 기타 ()				
비고				
작성일자	작성자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 border: none;"> </td> <td style="width: 50%; border: none;"> </td> </tr> </table>			확인자

경상남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인

2023년 10월 10일

● **경상남도 규칙 제3363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남도 규칙 제3356호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외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제6조의2제3항 본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12조제4항 중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를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4 조의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와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별표 5의 비고 제1호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를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5의2에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7의4의 가목 중 녹지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별표 1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사교류로 근무한 경력

○ 가산점 부여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초과 근무한 경우 최초 교류임용일부터 적용
- 인사교류 가산점은 최대 0.48점까지 부여

구 분	가산점
인사교류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초과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2점

별표 16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 가산점 부여 기준

- 재난·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단, 서무·예산·경리업무 담당자는 적용 제외)
- 가산점 총점은 0.7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산점, 격무·기피담당 근무실적 가산점과 중복 부여 불가

구 분	가산점
•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2점
• 2년 초과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3점
•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5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소하천정비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풍수해보험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별지 제3호서식 중 제1호의 응시원서 작성요령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3호서식 중 제2호의 응시원서 작성요령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부 칙

경상남도 규칙 제3356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의2 제3항 개정규정 : 2024년 1월 1일
2. 별표 7의4 개정규정 : 2025년 1월 1일
3. 별표 16 개정규정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4. 별표 17 개정규정 : 2024년 6월 1일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무경력 가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별표 16 개정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근무경력 가산점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제4조(실적 가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별표 17의 시행전 실적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실적 가산점은 이 규칙 별표 17의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실적가산점 평점에 반영한다.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별지 제3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		응 시 표 ()임용시험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④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2. 삭제

비 고

1.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데 이 터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농업기계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공 업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벼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농 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해양수산	해양교통 시 설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향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향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시 설	일반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수도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건 축	<p>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지 적	<p>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측 지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교통시설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도시교통설 계	<p>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디자인	<p>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p>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신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술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조리	조리	기 능 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 능 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	사역	기 능 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기 능 사 : 전기, 기계정비, 조정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4) 법무행정 :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행정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이터						
사서	사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자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업	축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의	수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해양수산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직렬	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관리사(12) 안경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안경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안경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수의사(3) 약사(3)	수의사 약사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수 질	약사(7) 위생사(12)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대 기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폐 기 물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직렬	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3조의3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 전문가
	테 이 터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판, 배관	
	농업기계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	농업기계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기계운전	<p>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 선	<p>기 술 사 : 조선</p> <p>기 사 : 일반기계, 조선</p> <p>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p> <p>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p>	
	일반전기	<p>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p> <p>기 능 장 : 전기</p> <p>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p>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	일반전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원자로조종 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 업	일반농업	기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식물검역	기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 자(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가축인공 수정사
	생명유전	기술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 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산림보호	기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산림이용	기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일반수산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 조기사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 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 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 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위생사
환경	수질	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 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 운영관리 사 3급
	대기	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능장 : 산림 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 (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 비율 적용 : 위생사
	폐기물	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 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능장 : 산림 기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가산 비율 적용 : 위생사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 설	도시계획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p> <p>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일반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수도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시 설	건 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채장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장호</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측 지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 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파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 (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농촌지도	<p>농업기계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공업연구	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전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공업연구	금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금 속	<p>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섬 유	<p>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화 공	<p>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 능 장 : 위험물, 가스</p> <p>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화 학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산업경영	<p>기 술 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p> <p>기 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p>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물 리	<p>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 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p> <p>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p>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p>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p> <p>기사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p> <p>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p>
	작 물	<p>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농촌지도	농 업	<p>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p>	
농업연구	원 예	<p>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p>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촌지도	원 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 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농촌지도	농촌생활	기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 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업경영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지도	농촌사회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 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 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 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연구	농 공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콤보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콤보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농업연구	축 산	<p>기 술 사 : 축산, 식품</p> <p>기 사 : 축산, 식품</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 인공수정사</p>
농촌지도	축 산	<p>산업기사 : 축산, 식품</p>	
녹지연구	임 업	<p>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p>	
	조 경	<p>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농촌지도	임 업	<p>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p>	
수의연구	수 의	<p>기 술 사 : 축산</p> <p>기 사 : 축산</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p>
농촌지도	가축위생	<p>산업기사 : 축산</p>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p>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수산자원	<p>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어촌지도	어 촌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p>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p>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p> <p>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p>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p>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해양수산 연 구	수산공학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 율적용 : 의사, 한의 사, 치과의사, 수의 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 자(특수, 일반), 방 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임상 병리사, 보건의료정 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 리치료사, 치과기공 사, 치과위생사, 작 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비 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 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위생 사

경 남 공 보

제2636호

2023. 10. 10.(화)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설연구	토 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농촌지도	농업토목	<p>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시설연구	건 축	<p>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기 사 : 방재	
	재난 관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16]

근무경력 종류 및 가산점(제25조의2제2항 관련)

1. 특수지에 근무한 경력

○ 특수지

특지	을지	병지
환경교육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제승당관리사무소, 수산자원연구소

○ 가산점 부여기준

- 당해 계급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제외)
- 특수지 가산점 총점은 0.7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가산점
• 특지·갑지(국가공무원, “가”지·“나”지)근무경력	1월마다 0.025점
• 을지(국가공무원 “다”지)근무경력	1월마다 0.018점
• 병지(국가공무원 “라”지)근무경력	1월마다 0.013점

2. 인사교류로 근무한 경력

○ 가산점 부여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초과 근무한 경우 최초 교류임용일부터 적용
- 인사교류 가산점은 최대 0.48점까지 부여

구 분	가산점
인사교류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초과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2점

3. 전문직위로 근무한 경력

○ 가산점 부여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구 분	가산점
•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5점
•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6점
•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8점

4.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 가산점 부여 기준

- 재난·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단, 서무·예산·경리업무 담당자는 적용 제외)
- 가산점 총점은 0.7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산점, 격무·기피담당 근무실적 가산점과 중복 부여 불가

구 분	가산점
•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2점
• 2년 초과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3점
•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월마다 0.05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소하천정비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풍수해보험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